

부산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0가단3363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

담당변호사 이고은, 이중섭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12. M

13. N

14. O

15. P

16. Q

17. R

18. S

19. T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

담당변호사 유전웅

변 론 종 결 2021. 11. 4.

판 결 선 고 2022. 1. 20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부산 연제구 U 도로 82㎡에 관하여, 피고들이 2020. 6. 5. V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피고들은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2020. 7. 3.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
제42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부산 연제구 U 도로 82㎡(이하 ‘이 사건 도로’라 한다)는 원고와 선정자들, 피고들 및 주식회사 W, X, Y, Z, AA(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‘피고 등’이라 한다)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AB 지상 AC아파트 AD동, AE 지상 AC아파트 AF동(이하 위 두 아파트를 함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 앞 도로로 이 사건 아파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.

나. 피고 등은 2020. 6. 5. V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. 7. 3.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2396호로 피고 등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,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AG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0. 6. 5. 피고 등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. 7. 3. 피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- (1)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므로,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(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의 V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특정물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금덕희

별지